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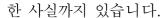
청 구 취 지

-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 사이에 급료는 월 금 1,000,000원씩 매달 20일 지급 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약정 없이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 ○○. ○.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효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종전과 같은 제품을 계속 제조하고 있고 그 판매량에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직원을 신규로 1명 더 채용



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다 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각 급료명세서

1.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현행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www.klac.or.krif.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함께 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